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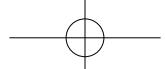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사업서비스업 안전보건 네비게이션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서비스업 재해예방 사업

구 분	집중기술지원	기초안전지원
목 적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재해다발 시설물·설비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내 위험기계 및 장소에 대해 위험요소 확인, 안전수칙 전파 등 기초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대 상	서비스업 중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한 중위험군 이상 사업장 중심 ※2014년은 건물 관리업 및 음식(집단 급식소 포함)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서비스업 산업재해 점유율이 높은 7대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 전업종 ※ 7대 업종 ①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②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③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⑥음식 및 숙박업 ⑦사업서비스업
내용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이행 확인을 통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및 이행 확인 • 안전보건 자료 제공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및 융자지원	• 재해 다발위험 유형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여부 확인(체크리스트 활용) • 위험장소 및 설비에 대한 안전수칙 (스티커 등) 부착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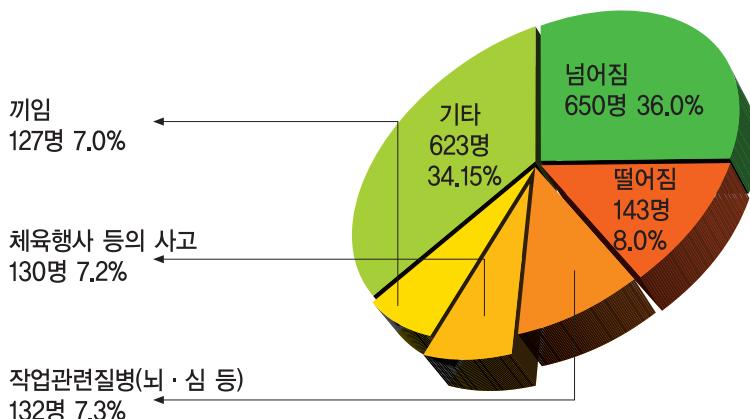
01 재해특성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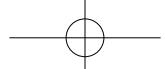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재해특성

- (업무내용) 인력공급, 기술서비스, 전문디자인, 사진촬영, 경호·경비, 사무관련 서비스 등의 업무
- (위험특성) 넘어짐 재해가 약 1/3을 차지하고, 떨어짐, 부딪힘 순으로 다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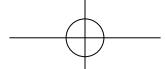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2013년)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650	36.0
떨어짐	143	8.0
작업관련 질병(뇌·심 등)	132	7.3
체육행사 등의 사고	130	7.2
끼임	127	7.0
기타	623	34.5
계	1,805	100.0%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점검 포인트	근로자 안전행동 요령	확인
01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복도 등 통행로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장해요인 확인	
02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사무실 내 공간이 비좁거나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보 확보	
03 계단 이동 시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0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진열, 광고판 게시 등 사다리 작업 시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움직일 때 사다리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	
05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 안전벨트 착용	떨어짐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모 · 안전대를 걸고 작업	
06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청소작업 트럭을 작업자 또는 통행인이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	
07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건물내부 기계실이나 창고의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08 칼 등 날카로운 사무용품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칼 등 날카로운 사무기구에 베일 수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안전작업 수칙 준수	
09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완료 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작업	



02 발생 형태별 재해사례

넘어짐

재해내용

청소중인 복도에서
미끄러짐

예방대책

- 물기는 수시로 제거
- 안전통로 확보
- 미끄럼주의 경고표지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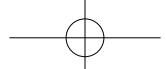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재해내용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짐

예방대책

- 계단에서 뛰지 말 것
- 난간을 잡고 이동
-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떨어짐

재해내용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사다리 사용
- 2인 1조로 작업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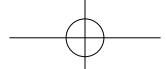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재해내용

형광등 교체 중 떨어짐



예방대책

- 안전사다리 사용
- 2인 1조로 작업
- 의자나 박스 등 사용금지



부딪힘

재해내용

유리 출입문에 부딪혀 부상

예방대책

- 유리 조심 표지 부착
- 전방 예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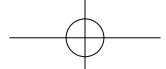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재해내용

과도한 물품 적재로 인한
부상

예방대책

- 안전통로 확보
- 과도한 물품 적재 금지
- 충분한 시야를 확보





끼임

재해내용

전동드릴에 옷소매가 끼임



예방대책

- 두손으로 견고하게 작업
- 헐렁한 옷 착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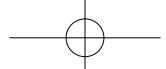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재해내용

출입문에 손이 끼임



예방대책

- 완충장치, 스토퍼 등 설치
- 끼임 주의 표지 부착



0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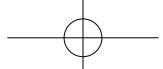
의무사항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 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위험성평가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법률상의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다든지, 작업 시 사용하고 있었던 기계설비는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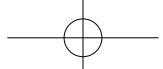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www.law.go.kr)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고용노동부 접속(www.molit.go.kr) > 법령마당 > 현행법령 > 산업 안전보건관련

“일터안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04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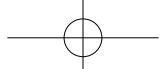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은?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도와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지원내용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에 대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심사 후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인정결정을 해드립니다.

※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안내 홈페이지(kras.kosha.or.kr) 참조





05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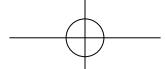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6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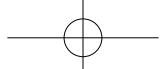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자는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위반 시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보호구





07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자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개정 2014. 3. 12. 시행 2014. 7.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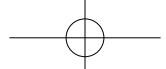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단, 중대재해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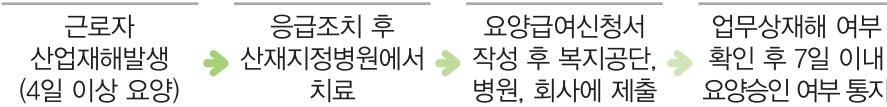
-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를 정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합니다.
 -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재발방지계획 첨부)을 보존하여도 됩니다.



08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입니다

산재요양신청 절차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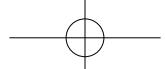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산재요양신청 절차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1 산업재해 요양신청	① 요양신청서(3부) ② 의사 소견서(날인)	
2 휴업급여 청구	① 휴업급여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 평균임금의 70% 지급(평균임금 산정처리)	
3 장해급여 청구	①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4 유족보상 청구 (사망 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5 장의비 청구 (사망 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588-0075



09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공정에 비치하고 경고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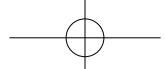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합니다.

MSDS작성 시 포함될 내용(7개 항목)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MSDS관련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
MSDS의 비치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화학물질 취급공정)에 갖춰두어야 함
경고표시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교육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 착용,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



10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대상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1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 건강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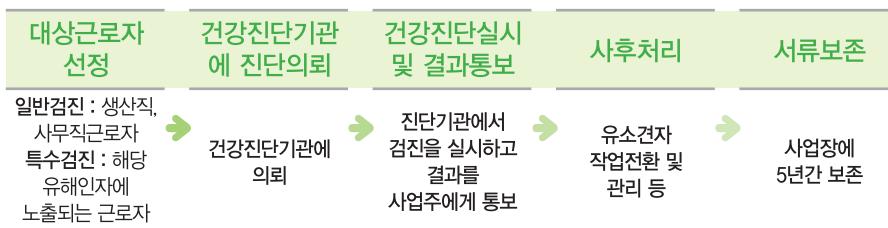
■ 종류 및 실시대상

종 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 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장애 호소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건강진단 절차



일반 건강진단 방법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 등 기타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문의